



## 중앙전파관리소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18년 1분기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점검 실시

### 1. 관련

가.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(기술기준) 및 동법 제43조(보고·검사 등)

나. 통신자원쟁책과-780(2013.7.23., 제3차 공중케이블정비 정책협의회 개최결과 통보)

2. 위 관련,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점검기간 : 2018. 3. 21. ~ 3. 30.(기간 중 5일)

나. 점검대상 : 불임 참조

다. 점검내용

1) 이용자 계약해지에 따른 공중케이블 철거여부(폐/사선)내역 기록·관리

2) 인입선 설치의 적정성

3) 공중케이블 관련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

3.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자는 해당구역 입회자를 아래 서식으로 2018. 3. 19.(월)까지 e-메일(hds0607@korea.kr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입회일자	구역명	사업자명	성명	전화(휴대전화)	비고

불임 1. 1분기 현장점검 대상 지역 1부.

2. 현장점검표 1부. 끝.

## 중앙전파관리소장



수신자 서울특별시(보도환경개선과장),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, 한국전력, 티브로드, 딜라이브, 드림라인,  
세종텔레콤, KT, SKT, LGU+, SKB, CMB, CJ헬로비전, 현대HGN

주무관 하대승 주무관 문주진 전파보호과장 전결 03/13  
박준선

협조자

시행 전파보호과-887 ( 2018.03.13. ) 접수 보도환경개선과-3070 ( 2018.3.14. )  
우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, 중앙전파관리소 / <http://www.crms.go.kr>  
(가락동)  
전화 02-3400-2336 /전송 02-3400-2329 / hds0607@msip.go.kr / 부분공개(5)

<붙임 1>

## 1분기 현장점검 대상 지역

구역명	점검 일시	전주 (본)	정비거리 (m)	정비사업자	정비년 도	비고
종로구-1	3. 21(수)	492	4,326	LGU+, KT, SKT, SKB 딜라이브, 드림, 티브로드	'13	
강남구-1	3. 22(목)	374	4,949	SKB, KT, LGU+, SKT 딜라이브, 세종, 드림	'14	
강남구-1	3. 27(화)	242	10,890	SKB, KT, LGU+, SKT 세종, 드림, 딜라이브	'16	
동대문구-2	3. 28(수)	69	2,880	LGU+, KT, SKT, SKB 드림, 티브로드, CMB	'16	
양천구-4	3. 29(목)	70	3,850	SKB, KT, LGU+, SKT 드림라인, CJ헬로비전	'16	
<b>계</b>		1,247	26,895			

※ 상기 정비사업자에서 밑줄 친 부분이 대표 사업자임

### □ 점검내용

○ 이용자 계약해지에 따른 공중케이블 철거여부(폐/사선 정비)

○ 제24조(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)

⑥ 기간통신사업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국선 등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하며, **그 내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** 다만, 서비스 이용계약이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설 2017.4.25., 2017.7.26.>

○ 현장점검시 해지해선 내용(**기록·관리**)을 **점검 하오니**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인입선 설치의 적정성

○ 뭉쳐있거나 늘어진 공중케이블

○ 공중케이블 관련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

○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

## 현 장 점 검 표

### 1. 일반사항

점검일자	2018. . .	방송통신사업자	
점검지역			

### 2. 조사내용

점검항목		점검결과					
규정	○ 옥외회선 지하 인입여부(제18조2항) -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						
	○ 인입선정비 미흡(제24조5항) - 인입점준수 - 5회선 미만의 국선 등 옥외 회선을 공중으로 인입시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 설치						
	○ 이용계약 해지회선 철거여부(제24조6항) -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설치된 옥외회선 철거 - 서비스 일부만 해지된 경우는 제외						
고시	○ 가공 강전류 전선간 이격거리(제7조) -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이격거리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저압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30cm 이상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padding: 2px;">고압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강전류케이블 30cm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기타 강전류전선 60cm 이상</td> </tr> </table>	저압	30cm 이상	고압	강전류케이블 30cm 이상	기타 강전류전선 60cm 이상	
	저압	30cm 이상					
	고압	강전류케이블 30cm 이상					
		기타 강전류전선 60cm 이상					
○ 공중케이블지지물의 등주방지(제10조) - 발디딤쇠 등을 지표상 1.8m 이상							
○ 공중케이블의 높이(제11조) - 도로상에서는 노면에서 4.5m 이상 - 교통지장 등 없는 경우 보도상에서 3m 이상							
기타	○ 공중케이블 표시(사업자별 식별표시)						
	○ 기타 미관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 - 여장말이, 늘어진 공중케이블, 무단설치 등						

※ 규정 :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

※ 고시 :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(국립전파연구원)

점검자		확인자	
-----	--	-----	--